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5. 7.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목 차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 I.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 근거	1
3. 실시 현황	1
4. 2015년도 기본방향	2
5. 주요 변경사항	2
➤ II.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	3
1. 측정체계	3
2. 설문평가 모형(안)	7
3.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감점(안)	9
4.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안)	10
5.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안)	11
➤ III. 측정분야별 설문조사방법	13
1. 직무관계자 평가	14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15
3. 주민 평가	15

▶ IV. 측정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일정	16
1. 결과 발표	16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6
3. 향후 추진일정	16
<<붙임1>>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17
<<붙임2>> 직무관계자 명부 및 정원표 작성 서식	18
<<붙임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명부 작성 서식	20
<<붙임4>> 주민대표 명부 작성 서식	24
<<붙임5>>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관련 작성 서식	25
<<붙임6>> 실적지표 관련 작성 서식	27

I.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이해관계자(지자체 직원, 전문가 및 지역단체,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실시 현황

-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13.5월)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안 등 설명
- '13년 측정모형 개발 및 최초 측정 실시
 - 광역의회(17개), 인구 50만 이상 또는 권역별 인구 가장 많은 기초의회(30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 및 결과 발표('13.12월)
- '14년도는 제6회 전국 지방의회 선거로 미 실시('14.6월)

4.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기본 방향

□ 측정대상 확대 : 총 62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 시·도 권역별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3개)

※ '15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은 <붙임1> 참조

□ 실시 기본방향

- 평가 주체를 특성별로 재분류하여 측정 모형의 타당도 제고
 - 업무 연관성에 따라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주민 등 평가단을 확대 재편성
 - ※ 직무, 경제, 공익, 여론 등 다양한 관계를 이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을 반영
 - 평가 주체의 다양화로 평가의 완전성 확보와 영역별 문제점 도출
- 주민대표인 지방의회 특성을 감안, 주민평가단 영향력 확대
 - 지역민 평가 강화로 주민 선출 기관인 지방의회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민 시각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
 - ※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계층이 평가에 참여
-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평가로 결과에 대한 현실 타당도 제고
 - '13년 심의·의결 영역에 국한된 조사에서 의정활동 전반으로 측정영역 확대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 '계약업체 선정 관여'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의정활동에서의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Ⅱ.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

1. 측정 체계 : [설문평가 점수 - 감점지표]

□ 설문평가 대상 및 분류

직무관계자	공무원	의회사무처 직원, 의회 관련 업무 담당 집행부 직원
	산하기관 관계자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직원 및 관계자(예산, 감사부서)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업체 및 이익단체	지역 내 면허를 둔 전문종합건설업자, 여행업, 주택건설사업자, 구획정리사업자 및 이익단체(번영회, 소상공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주민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지역언론 기자, 학계, 자문위원 등 전문가
주민	이장·통장	이장·통장
	일반주민	만 19세 이상 주민

※ '13년 내부, 외부, 정책고객(광역) 평가단을 업무연관성에 따라 재분류하고, 광역·기초의회 동일 모형체계로 구성

□ 평가항목

○ 직무관계자 평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이 지방의회의 의안심사, 예산 심의 등 직무와 관련된 청렴도를 평가

※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자체 직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를 같은 평가단으로 구성('13년 내부, 정책고객으로 각각 분류)

- 의정활동 청렴지수와 의회운영 청렴지수 등 2개 상위영역 아래 24개의 세부 설문항목으로 구성

(의정활동 청렴지수) 의정활동, 인사영향력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평가

(의회운영 청렴지수) 의회운영예산과 조직관리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예방 노력을 평가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경제·사회·행정 분야에서 특혜, 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

※ 지방의회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계층을 별도 분류, 전문가 집단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

- 의정활동 청렴지수와 의회운영 청렴지수 등 2개 상위영역 아래 18개의 세부 설문항목으로 구성

(의정활동 청렴지수) 의정활동에서 특혜 및 알선·청탁,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과 인사 영향력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평가

(의회운영 청렴지수) 의회운영예산과 조직관리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예방 노력을 평가

○ 주민 평가

- 지방의회를 선출한 주민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평가

- 의회 인지도가 높은 주민 대표(이·통장, '13년 정책고객)를 포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

- 의정활동 청렴지수와 의회운영 청렴지수 등 2개 상위영역의 1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

※ '13년 7개 평가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설문 확대

(의정활동 청렴지수)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부패인식을 평가

(의회운영 청렴지수) 의회운영예산과 조직관리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예방 노력을 평가

□ 감점지표 체계 및 내용

○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감점

- 청렴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13년 추진 실적 평가지표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유지
- 전체 지방의회(243개) 중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의회는 101개 의회로 전체의 41%에 불과(6.30현재)

< 실적평가 지표(안) >

평가영역	평가지표	비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①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운영 여부
	②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운영 여부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이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부패금액 및 부패행위자의 직위 등을 점수화하여 감점

(부패사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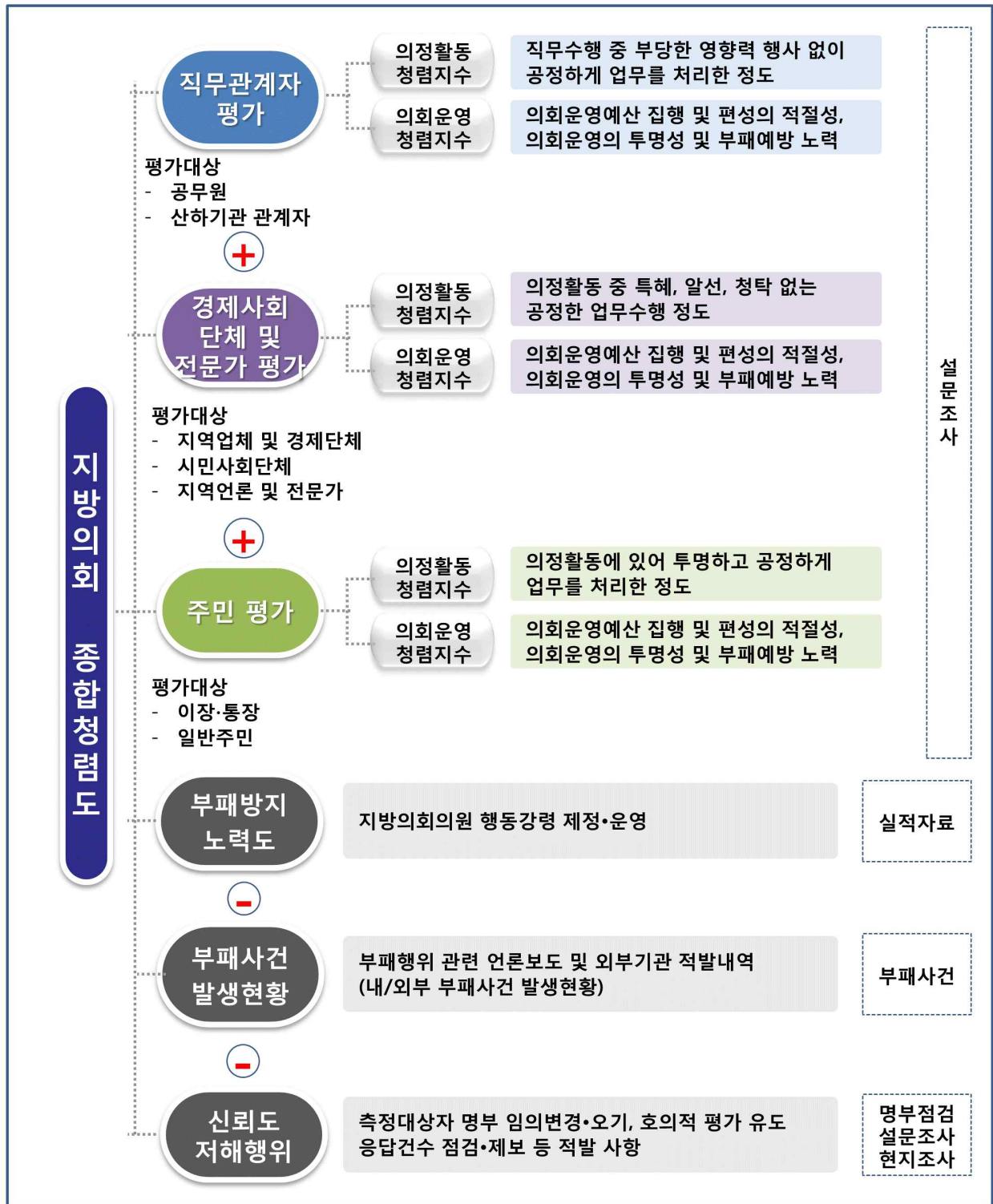
- 지방의회의원의 부패사건 발생시 부패금액, 관행성·다수 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을 점수화하여 감점

※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 심의회에서 평가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호의적 평가유도와 표본오염행위 점검 적발 사항을 점수화하여 감점

<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 >



2. 설문평가 모형(안)

□ 측정 대상기간 : '14. 7. 1. ~ '15. 6. 30.(1년간)

□ 설문 내용 : 2개 평가영역, 24개 항목

- 의정활동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인식과 의회운영 및 부패방지 노력 등을 설문

< 설문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항목명		평가대상							
			직무 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주민		
			공무원	산하 기관	업체, 경제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언론, 전문 가	이장· 통장	일반 주민	
의정활동 청렴지수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	○	○	○	○	○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	○	○	○	○	○	○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	○	○	○	○	○	○	
		공정한 의정활동	○	○	○	○	○	○	○	
		권한남용	○	○	○	○	○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	○	○	○	○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	○	○	○	○	○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	○	○	○	○	-	
	경험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	○	○	-	-	-	-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	○	○	○	-	-	
		정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	○	-	-	-	-	-	
		사적 이익을 위한 위법·부당한 개입	○	○	-	-	-	-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처리	○	○	-	-	-	-	-	
		계약업체 선정 관련 알선·청탁 직접경험	○	○	○	-	-	-	-	
인사	인식	인사 청탁·개입	○	○	○	○	○	-	-	
	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	○	-	-	-	-	-	
의회운영 청렴지수	의회운영 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	○	○	○	○	○	○	
		예산 방만 집행	○	○	○	○	○	○	○	
		외유성 출장	○	○	○	○	○	○	○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	○	○	○	○	○	-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	○	-	○	○	○	-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	○	-	○	○	○	-	
		참고문항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	○	○	○	○	○	○	
참고문항	의회 신뢰도	○	○	○	○	○	○	○		
	반부패 수준 개선도	○	○	○	○	○	○	○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및 점수 산출방식

- 부패직·간접경험 항목 : 경험여부 선택형 척도
 - 지방의회별 직·간접 경험률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 부패직·간접경험점수	=	$10 \times (1 - \frac{\text{직·간접 경험률}}{\text{UCP}})$
* 직·간접경험률 = [부패 직·간접 경험자 수/기관별 응답자수] X100		
* UCP : 기관별 직·간접경험률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부패직·간접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 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긍정적인 응답일수록 10점에 가깝고 부정적인 응답일수록 0점에 가깝도록 배점

□ 조사방법

- 내부고객 및 전문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E-mail) 조사 병행
-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3.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감점(안)

□ 실적평가 내용 : 1개 평가영역, 2개 세부지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에 따라 2개 지표로 구성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제정이 반드시 필요
 -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처리를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도 필수

< 부패방지 노력도 평가항목(안) >

평가영역	평가지표	내용	비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¹⁾ ’	①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운영 여부	행동강령과
	②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운영 여부(민간위원 참여)	

※ 세부지표별 감점범위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추후 확정

□ 평가방법

- 해당 평가지표 소관부서에서 지표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1)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

4.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안)

(1)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감점 (대상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점수화 대상 범위 >

구 분	반영 방안
적용 대상	<p>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p> <p>※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에서 제외</p> <p>※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p>
기본 자료	<p>기관별 부패행위자 처분 자료</p> <p>※ 권익위 제로미 사이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와 각 기관 제출 자료 대조 및 현지 확인점검 실시</p>
대상 기간	<p>'14.7.1.~15.6.30. 간의 처분</p> <p>※ 부패행위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처분이 확정된 일자(징계의결일자) 기준</p> <p>※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최종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준</p> <p>※ 평가기간 중 발생한 부패행위 중에서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지수 보완 적용</p>
처분 유형	<p>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p>
감점반영 부패 유형	<p>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 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p> <p>※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p>
적발 유형	<p>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p> <p>※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 자체적발은 감점에서 제외</p>
감점 범위	<p>지방의회 청렴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최대감점폭 설정</p>

[2] 부패사건지수 감점 [대상 : 지방의회의원]

□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대상 범위 >

구 분	반영 방안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의 부패행위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등
대상 기간	2014. 7. 1.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시점까지의 부패사건
부패 유형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감사완료, 기소 이상의 수사·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
감점 범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최대감점폭 설정

○ 점수산출 방식

- 부패금액, 관행성·다수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되,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관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 심의회에서 평가

□ 부패사건지수 자료 수령 및 검증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권익위가 검색하여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

-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제출기준(대상기간, 대상범위, 측정대상자 등)과 **불일치한 명부** 작성
- 이해관계자, 소속직원이 아닌 제3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명부 조작·오기**
- **불리한 답변예상자** 누락 등

표본관리 행위

- 측정대상자를 사전접촉(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하여 **호의적인 답변을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조사, 자체청렴도 응답자 파악 등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직원교육을 통한 독려, 청렴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명단 파악 등

'부패사건 발생 감점' 관련 자료 누락 또는 허위 제출

-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누락·허위 제출
- 부패사건지수 소명 자료 허위 제출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감점방안

- **설문감점** : 설문조사시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수와 표본수를 고려한 산식**에 의해 감점
- **점검감점** : **명부점검, 현지점검, 제보** 등으로 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렴도 점수 감점·위반사실 공표**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 변경, 무자격자 기재, 오기 등에 대해서는 **명부 조작·오기의 건수 및 심각성**에 따라 차등 감점
 - **현지점검 또는 제보로 확인된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점폭 결정**

< 기존 점검감점 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변경·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자 명단·연락처 임의 변경 및 오기 ▪ 무자격자(직원·친인척·지인 등)를 민원인 명부에 기재 ▪ 무자격자의 설문참여 ▪ 측정대상자 명부 일부 누락
호의적 평가 유도 설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유도행위 ▪ 집합교육·지시 ▪ 설문응답 사전연습 실시
자체청렴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응답직원 명단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명단 파악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조사 응답시 URL을 임의로 조작하고 타인의 메일 주소를 도용

Ⅲ. 측정분야별 설문조사방법

1. 직무관계자 평가

조사표본 할당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직원 명부를 직급별로 총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대상에 포함
- ※ 광역의회 6급 이상, 기초의회 7급 이상

조사방법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및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²⁾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 메일에 링크된 조사시스템(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접속한 후 설문 응답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15. 7.월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명부

※ 의회사무처 및 산하기관 직무관계자만 작성, 집행부 소속 직원은 '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명부 활용

2) 예산 심의, 행정사무(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산하기관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조사표본 할당

- 2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정책고객 리스트를 유형별로 층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

□ 조사방법

- 측정대상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가·사회단체회원·계약업체 풀(Pool)을 구성하여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 이메일 및 스마트폰 조사는 링크된 조사시스템(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접속한 후 설문 응답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전문가
 - 해당 지자체 출입기자, 자문위원, 교수 및 관련 학회, 지역 시민단체,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계약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토건 면허자 및 직무관련성이 높은 협회·이익단체·자생단체 등의 관계자

3. 주민 평가

- 주민대표(통장, 이장 등)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조사

IV. 측정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일정

1. 결과 발표

-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
 - 청렴도 점수 및 광역의회·기초의회별 등급 발표
- 지방의회별 청렴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 발표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 측정대상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분석결과 제공
- 청렴도가 낮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등 개선 노력을 독려하고 청렴정책 추진상황 관리

3. 향후 추진일정

- 지방의회별 청렴도 측정 관련 자료 제출 : 7. 31(금)
 - 직원 명부, 계약업체·사회단체·전문가 명부, 징계처분 현황 등
- 청렴도 측정 실시 : 9월~10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 '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검토 : '16. 1월

붙임 1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62개)

구 분	기 관 명			
광역의회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 (45개)	서울	강남구 의회	울산	남구 의회*
		강동구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강서구 의회		남양주시 의회
		관악구 의회		부천시 의회
		구로구 의회		성남시 의회
		노원구 의회		수원시 의회
		동작구 의회		안산시 의회
		서초구 의회		안양시 의회
		성북구 의회		용인시 의회
		송파구 의회		의정부시 의회
		양천구 의회		파주시 의회
		은평구 의회		평택시 의회
		중랑구 의회		화성시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강원
	대구	달서구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북구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수성구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광주	북구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인천	남구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남동구 의회		포항시 의회
부평구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서구 의회			창원시 의회	
대전	서구 의회			

*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명부 서식

○○○의회사무처 직원명부

일련 번호	소속	직렬	직급	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작성요령>

1. 소속 : “○○실·국 ○○과”로 표기
2. 직렬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등 직렬 표시
3. 직급 : 해당 직급 또는 상당 직급 표시
4. e-mail 주소 : 자주 사용하는 메일 제출
5. 전화번호 : 조사기간 중에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정원표 제출 서식

○○○의회 정원표

총 정원수	직렬	직급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 정원표 서식은 의회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 가능

□ 산하기관 관계자 명부 서식

○○○의회 산하기관 관계자 직원명부

일련 번호	소속	직렬	직급	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작성요령>

1. 산하기관 : 지방의회로부터 예결산 심의 및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공사, 공단, 의료원, 기타 출자출연기관
2. 소속 : “○○공단, ○○수련원”등으로 표기
3. 성명·전화번호·이메일
 - 의회, 예산,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부서장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 기재(이메일 조사 원칙)
 - ※ 산하기관 담당자의 이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를 기재(전화 조사 병행)
4.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 전문가 명부 서식(광역·기초의회 공통)

○○○의회 전문가 현황

일련 번호	전문가 유형	소속기관	성명	전화	이메일
1					
2					
3					
4					

<작성요령>

1. 전문가 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해당유형 기재

- 출입기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기자단
- 학계 : 해당 지방의회 관련 자문을 맡은 교수, 연구원, 관련 학회 등
- 심의·자문위원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 회계사·변호사
- 시민단체 : 해당 지역 시민단체(YMCA, YWCA,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흥사단, 의회모니터링단체 등)
- 그 외 기타 전문가 등 해당 유형 기재

2. 소속기관 : 구체적인 소속단체·기관을 기재

※ 출입기자의 경우 소속 언론사명, 학계는 소속 학교 또는 학회명, 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시민단체명

3. 성명·전화번호·이메일 : 해당 전문가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 기재

4.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 이익단체 명부 서식(광역·기초의회 공통)

○○○의회 이익단체 현황

일련 번호	이익단체 유형	단체명	성명	전화	이메일
1					
2					
3					
4					

<작성요령>

1. 이익단체 유형 : 업무관련성이 높은 협회 또는 이익단체(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세무사협회, 요식업협회, 건설협회, 농민회, 지역상공회의소, 번영회 등)
2. 단체명 : 해당 단체의 명칭 기재
3. 성명·전화번호·이메일
 - 해당 협회 또는 이익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기재
4.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 자생단체 회원 명부 서식(기초 의회만 제출)

○○○의회 자생단체 회원 현황

일련 번호	단체 유형	단체명	성명	전화	이메일
1					
2					
3					
4					

<작성요령>

1. **단체 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해당유형 기재
 -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회, 청년회의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 자생단체
2. **단체명** : 해당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기재
3. **성명·전화번호·이메일**
 - 해당 단체 임원 및 회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기재
4.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 계약 및 토건업자 명부 서식(기초의회만 작성)

○○○의회 면허자 현황

일련 번호	면허 유형	단체명	성명	전화	이메일
1					
2					
3					
4					

<작성요령>

1. 면허자 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해당유형 기재

- 전문·종합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자
-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 주택재개발사업자 :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 토지구획정리사업자 :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소속기관(단체명) : 해당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기재

3. 성명·전화번호·이메일

- 해당 면허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 및 임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기재

4.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 이·통장 명부 서식(기초·광역 공통)

○○○의회 이·통장 현황

일련 번호	유 형	소속기관	성명	전화	이메일
1					
2					
3					
4					

<작성요령>

1. 유형 : 이·통장 중 해당사항 기재
2. 소속기관 : 해당 지자체 명칭 기재
3. 성명·전화번호·이메일
 - 이·통장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 기재
4. 제출기관
 - 기초 의회는 해당 지자체의 이·통장 명단 전수 제출
 - 광역 의회는 시·도청이 소재한 기초지자체의 이·통장 명단을 제출 단, 시·도청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대상인 경우 제출 불필요
5.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의회 부패행위 징계자 명부

순번	성명	직급	부패 유형	부패 금액	적발 유형	처분 유형	처분 확정일	부패행위 발생일
1	○○○	3급	금품수수	150천원	검찰	파면	2015-3-1	2014-1-1
2	△△△	6급	직권남용	해당없음	감사원	견책	2014-8-1	2013-2-1

- ※ 2014.7.1.~2015.6.30. 기간 중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징계처분 (견책이상)된 직원 명부 제출
-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모든 부패행위로 인한 처분현황 제출(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말 것
- ※ 단,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작성할 것

<작성요령>

1. **부패 유형**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직권남용,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 해당유형 기재
2. **부패 금액** : 천원 단위로 기재(부패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3. **적발 유형** : 권익위, 감사원, 행자부, 총리실, 군·검·경찰 중 해당유형 기재
4. **처분 유형** : 당연퇴직, 파면, 면직,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기재
5. **처분 확정일** : 당연퇴직 된 날 또는 처분 된 날(징계의결일자) 기재
6. **부패행위 발생일** : 실제 부패가 발생한 날을 기재
7.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의회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자 명부

순번	성명	직급	부패 유형	부패 금액	적발 유형	처분 유형	처분 확정일	부패행위 발생일
1	○○○	3급	금품수수	100천원	검찰	경고	2015-3-1	2014-1-1
2	△△△	6급	직권남용	2000천원	감사원	주의	2014-7-1	2013-2-1

※ 2014.7.1.~2015.6.30. 기간 중에 부패행위로 주의·경고·훈계 등을 받은 직원 명부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모든 부패행위로 인한 처분현황 제출(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주의·경고·훈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말 것

※ 2014.7.1.~2015.6.30 간의 주의 등 처분대장 별도 제출(위 해당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처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작성요령>

1. 부패 유형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중 해당유형 기재
2. 부패 금액 : 천원 단위로 기재
3. 적발 유형 : 권익위, 감사원, 행자부, 총리실, 군·검·경찰 중 해당유형 기재
4. 처분 유형 : 주의, 경고, 훈계 등 해당유형 기재
5. 처분 확정일 : 처분 된 날(징계의결일자) 기재
6. 부패행위 발생일 : 실제 부패가 발생한 날을 기재
7.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

○○구(시·도)의회 청렴도 실적지표 이행여부

평가 영역	평가지표	내용	이행 여부	근거	
				조례·규칙의 명칭	제정 일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³⁾	①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운영 여부	예 시) ○	예시) 서울특별시 ○○구 의회 의원 행동강 령 조례	예 시) 20 13 .9. 26
	②행동강령 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운영 여부(민간 위원 참여)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실적은 다음 안내에 따라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노력’ 실적 증빙자료 제출 안내

①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정 여부를 직접 조회 확인 예정이므로 상기 시스템에서 해당 조례의 조회가 가능한 의회는 별도 증빙제출 불필요
- 단, 상기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안 및 본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②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과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한 의장 내부결재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
- 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 이외의 자가 결재한 문서도 인정. 이 경우에는 자문위 개최결과 문서도 증빙으로 제출

< 참고 : 증빙자료 파일명 설정 안내 >

▶ 증빙자료 제출시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의원 행동강령.hwp
- 의회 행동강령 본회의 의결 증빙.hwp
- 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hwp
- 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내부 결재.hwp
- 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hwp

※ 증빙자료는 ‘15. 10. 16.까지 별도 제출 가능